옥 천 군

선람	기관의 장

군 보

http://www.oc.go.kr

제1271호 2022. 8. 19.(금)

【공 고】

○ 옥천군 공고 제2022-1076호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 옥천군 공고 제2022-1083호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옥천군 공고 제2022-1084호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7
○ 옥천군 공고 제2022-1086호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2
○ 옥천군 공고 제2022-1087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0
○ 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22-64호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75
○ 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22-65호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0

회람									

발행: 옥천군 편집: 기획감사실(☎730-3063)

옥천군 공고 제2022-1076호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설사용료를 감면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이용료의 감면 신설(별표2)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28조

5. 의견제출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14, FAX : (043)731-737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신설 19. 12. 20., 개정 2021.12.30.>

이용료 감면기준 (제9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별표1의 가목의 경우	별표1의 나목의 경우
1.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100%	100%
2. 옥천군에 소재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50%
3. 옥천군민이 이용하는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라 옥천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30%	50%
4. 교육관련 기관·단체가 학생연수, 수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20명 이상, 고등학생 이하)	30%	-
5.「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이용하는 경우	30%	-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
7. 미성년자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이용하는 경우	30%	-
8.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40%	-
9.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가 이용하는 경우	30%	-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큰 항목만 적용한다.
※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22-1083호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옥천통합복지센터의 회의실 대관 규정 신설과 주차장 이용 시간 확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군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회의실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료 징수·감면·반환 규정 신설

가. 회의실 사용허가 근거 신설(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나. 사용허가의 제한 신설(안 제8조의2)

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신설(안 제8조의3)

라. 회의실 사용료 부과 및 감면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별표1)

마.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별표 2)

○ 주차장 이용시간 확대 규정 개정 (안 제10조)

가. 복지센터 이용차량 2시간 무료 이용 → 복지센터 이용차량 무료

4. 의견제출

○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2,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규제영향 분석서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입주대상) 복지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자
2. 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조의 제목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에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복지센터 내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신청인에게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복지센터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복지센터의 운영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의3(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취소(정지)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사용허가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인이 별표 1의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리·운영 주체 또는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예약취소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단서 중 “최초 2시간까지 무료”를 “무료”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제8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단체명			
사용시설			사용인원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부터(시간 분)			
사 용 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대상의 적정성 및 사용료 감면 대상 확인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보유기간	사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

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허가서 [제8조제3항 관련]

허가번호		
주 소		
성 명		
허가 사항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부터(시간 분)
	사용료	
사 용 시 준수사항		1.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법규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시설물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의 타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수 **관인**

[별지 제3호서식]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제8조제3항 관련]

연번	신청일	사 용 시 설	신 청 인		사 용 기 간	사용목 적	사용 인원	사용 료	사용허 가 여·부
			주 소	성 명					

[별지 제4호서식]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취소(정지)통지서

[제8조의3제2항 관련]

신청인	성 명 (기관, 단체)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사용시설		사용일시	
	사용목적			
취소 및 정지사유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취소(정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수 **관인**

[별지 제5호서식]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9조제4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번호		
주 소		
성 명		
허가 사항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부터(시간 분)
	사용요금	
감면율 및 감면사유		
첨부서류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별표 1]

사용료 및 감면기준(제9조제4항 관련)

□ 사용료

구분		사용허가 시간	사용료
시설 대관	회의실 (09:00~18:00)	3시간 이내	50,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20퍼센트 가산	

□ 감면기준

구 분	감면율
1.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100퍼센트
2. 옥천군에 소재하는 비영리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50퍼센트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반환금액
회의실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	○ 사용개시 5일전: 사용료 전액 ○ 사용개시 1 ~ 4일전: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 당일: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 사용개시 후: 사용한 일수에 비례한 사용료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하여 배상
	재난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 사용료 전액
	신청인 귀책사유	○ 사용개시 5일전: 사용료 전액 ○ 사용개시 1 ~ 4일전: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 사용 당일: 당일 사용료 환불 불가 ○ 사용개시 후: 사용한 일수에 비례한 사용료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10퍼센트를 감산하여 환급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입주대상) 복지센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자, 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3조(입주대상) 복지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자 2. 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조(사용허가) (생 략)	제8조(사용허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복지센터 내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군수가 신청인에게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

	3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신 설>	제8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복지센터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복지센터의 운영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 설>	제8조의3(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취소(정지)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② (생 략)	제9조(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사용허가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군수는 신청인이 별표 1의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리·운영 주체 또는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예약취소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 이용) 복지센터 내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는 「옥천군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 다만, 복지센터 이용 차량은 최초 2시간까지 무료로 한다.	제10조(주차장 이용) ---------- ---------- ----------. ---------- 무료 ----------.

규제영향 분석서(1)

Ⅰ. 분석대상 규제 개요

1. 규제사무명	옥천통합복지센터 회의실 사용허가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복지정책과 과장 권미란, 복지기획팀장 김정순, 주무관 황영애					
4. 근거법령명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5.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지역주민 - 옥천군 소재 기관·단체					
5.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옥천통합복지센터 회의실 사용허가 신설(안 제8조 제2항) - 복지센터 내 회의실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옥천통합복지센터는 행정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주민 등 사용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통합복지센터 내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신청 절차 및 사용 허가를 규정하여 통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 (참고) · 6층 대의실 150석: 빔프로젝터, 전광판, 음향시설 구비
· 6층 소회의실 70석: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구비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명확한 사용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용신청에 대한 혼선 방지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교통 및 이용 접근성이 높은 통합복지센터를 주민 누구에게나 개방함으로써 개인 및 단체발전에 긍정적 역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주민편의 공간 제공과 센터의 활용성 제고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해당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규제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허가 시 사용료 납부 규정 신설
- 회의실 사용신청 절차 및 사용허가 규정 신설로 체계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단체 등에 편의공간 제공 및 복지센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해당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에 근거하여 신청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입법예고를 통한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라. 집행상 예상되는 문제점: 해당없음

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해당없음

규제영향 분석서(2)

Ⅰ. 분석대상 규제 개요

<table>
<tr><td>1. 규제사무명</td><td colspan="6">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td></tr>
<tr><td>2. 구 분</td><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존속기한
연 장</td><td></td></tr>
<tr><td>3. 소관부서 및
작성자</td><td colspan="6">○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복지정책과 과장 권미란, 복지기획팀장 김정순, 주무관 황영애</td></tr>
<tr><td>4. 근거법령명 등</td><td colspan="6">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td></tr>
<tr><td>5.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6">- 지역주민
- 옥천군 소재 기관·단체</td></tr>
<tr><td>5.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td><td colspan="6">○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사유 신설(안 제8조의3 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해당 시설을 사용허가와 다르게 사용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통합복지센터 사용허가 이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등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통합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규정 신설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강화
- 명확한 사용취소 및 정지 사유 등을 규정하여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피해 방지 및 행정 신뢰도 제고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해당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통합복지센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규정을 신설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시설 관리 강화 및 이용자 혼선 방지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해당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취소 및 정지 사유가 명확하며 안 제9조의2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로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완하였음

다. 이해관계자 협의: 입법예고를 통한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라. 집행상 예상되는 문제점: 해당없음

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해당없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22-1084호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가설건축물 조항 정비(안 제23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 제4조,제8조,제12조,제26조,제32조, 제40조,제41조,제42조)

가. 건축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함.

나. 공개공지등의 확보 건축물에 대한 관리사항 추가.

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 강화

4. 개정근거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5. 의견제출

○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허가처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83, FAX : (043)731-191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사항

제4조제3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제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간사와 서기 등)”을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간사 1명”으로, “간사와 서기”를 “간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 간사, 서기”를 “위원, 간사”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3호 중 “된”을 “된 것으로서 너비1.5미터 이하이며 연면

적 합계 30제곱미터이하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5조제12항”을 “법 제25조제14항”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를 “영 제27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개공지 등”을 각각 “공개공지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구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제41조 중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를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4 및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공개공지등 안내판 설치기준 (제32조제6항 관련)

1. 표기 내용

가. 안내문 :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나. 배치도 :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다. 범 례 :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라. 그 밖에 공개공지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벽부형) 가로 500㎜ × 세로 750㎜
(지주형) 가로 500㎜ × 세로 1200㎜

나. 재 질 : 스테인리스 스틸(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별지 제6호서식]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제32조제6항 관련)

<table>
<tr><td>일련번호</td><td colspan="5"></td></tr>
<tr><td>위 치</td><td colspan="2"></td><td>건 물 명</td><td colspan="2"></td></tr>
<tr><td>건축주 주소</td><td colspan="2"></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허가일자
(허가번호)</td><td colspan="2"></td><td>사용승인일
(사용승인번호)</td><td colspan="2"></td></tr>
<tr><td>용도지역</td><td></td><td>대지면적</td><td></td><td>용 도</td><td></td></tr>
<tr><td colspan="2">공개공지등 설치면적</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공개공지등 시설물 현황</td><td colspan="4"></td></tr>
<tr><td>확 인</td><td colspan="5">작성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날인 또는 인</td></tr>
<tr><td>공개공지등
평면도</td><td colspan="5"></td></tr>
<tr><td>설치사진</td><td colspan="5"></td></tr>
</tabl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제4조(기능)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사항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20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삭 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 ⑧ (생 략)	제8조(회의)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거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 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 ---------- ------ 간사 1명---------- -----, 간사---------- ---------- ----------. ② ---------- ----------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준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비밀 준수) --- 간사, --- ---------- ---------- ---------- ----------.
제23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23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② ---------- ----------

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주요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외벽이 없고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이와 비슷한 재질로 된 통로 등 비가림시설	13. ---------- ---------- ---------- 된 것으로서 너비1.5미터 이하이며 연면적 합계 30제곱미터 이하의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26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② (생 략)	제32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④ ----------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공개공지등---------- --. ----------.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옥천군 군계획 조례」제46조에 따른 용적률	1. ----------공개공지등 ----------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2. ----------공개공지등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 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할 것	3. ---------- 공개공지등----------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군수에게 신고한 후	⑤ ---------- 공개공지등----------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
<신 설>	⑥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구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② (생 략)	제4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

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 (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도로 폭 또는 대지면적이 작아서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하고자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1조 (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 ---------- ---------- ---------- ---------- ---------- ---------- ---------- ----------.
제42조(이행강제금) ① 군수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	제42조(이행강제금) ① -------- ---------- ---------- ---------- --- 60제곱미터 ----------

용 건축물과 같은 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	③ ---------- ---------- ----------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22-1086호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의 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와 지능정보화의 추진 및 정보격차의 해소 부분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및 내용 보완

가. 지역정보화 → 지능정보화(안 제1조, 제3조, 제5조 등)

나.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안 제4조, 제5조)

다. 정보화위원회 → 지능정보화위원회(안 제5조)

라. 정보화책임관 → 지능정보화책임관(안 제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 etcdark@korea.kr

전화 : 043)730-3193,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옥천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옥천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옥천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을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위원회”를 “옥천군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행계획”을 각각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업무”를 “지능정보화 업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정보화 업무”를 “지능정보화 업무”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행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

관”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지능정보화의 추진”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을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9조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지능정보통합센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정보화 교육)”을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 추진 능력”을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으로, “정보화 교육”을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정보화 교육”을 각각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보화의 확산”을 “지능정보화의 확산”으로, “정보화 역기능”을 “지능정보화 역기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보 취약계층”을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이하 “정보취약계층”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 취약계층”을 “정보취약계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옥천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능정보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를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 --- 지능정보화----------.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5. 지능정보화 ----------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옥천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 옥천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② ----- 실행계획----------

한다.	---.
제5조(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5조(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능정보화 ---------- ---------- 옥천군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1. 실행계획----------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2. 실행계획----------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지능정보화----------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1. 정보화 업무 관련 부서장	1. 지능정보화 ---------
2.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능정보화----------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 지능정보화 업무----------.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지능정보화 ---------- --------- 지능정보화 사업---------- --- "지능정보화책임관"---------.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 지능정보화 업무----------.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1. 지능정보화 ---------- ----------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2. ---------- -- 실행계획----------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지능정보화 ---------- --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8. ---------- 지능정보화책임관---------- --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 지능정보화----------.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② ---- 지능정보화---------.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지능정보화 ----------.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지능정보화 ---------- 지능정보화---------.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다.	--.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지능정보화---------- 지능정보통합센터----------.
제12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지능정보화 교육----------.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 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 지능정보화 교육----------.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지능정보화 교육 ----------.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4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 지능정보화의 확산---------- 지능정보화 역기능----------

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이하 “정보취약계층”이라 한다)----. ② ---- 정보취약계층 ---------- ---------- ---------- ----------. ③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22-1086호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의 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와 지능정보화의 추진 및 정보격차의 해소 부분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및 내용 보완

가. 지역정보화 → 지능정보화(안 제1조, 제3조, 제5조 등)

나.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안 제4조, 제5조)

다. 정보화위원회 → 지능정보화위원회(안 제5조)

라. 정보화책임관 → 지능정보화책임관(안 제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 etcdark@korea.kr

전화 : 043)730-3193,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옥천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옥천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옥천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을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위원회”를 “옥천군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행계획”을 각각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업무”를 “지능정보화 업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정보화 업무”를 “지능정보화 업무”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행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

관”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지능정보화의 추진”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을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9조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지능정보통합센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정보화 교육)”을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 추진 능력”을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으로, “정보화 교육”을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정보화 교육”을 각각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보화의 확산”을 “지능정보화의 확산”으로, “정보화 역기능”을 “지능정보화 역기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보 취약계층”을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이하 “정보취약계층”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 취약계층”을 “정보취약계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옥천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능정보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를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 --- 지능정보화----------.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5. 지능정보화 ----------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옥천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 옥천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② ----- 실행계획----------

한다.	---.
제5조(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5조(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능정보화 ---------- ---------- 옥천군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1. 실행계획----------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2. 실행계획----------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지능정보화----------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1. 정보화 업무 관련 부서장	1. 지능정보화 ---------
2.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능정보화----------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 지능정보화 업무----------.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지능정보화 ---------- --------- 지능정보화 사업---------- --- "지능정보화책임관"---------.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 지능정보화 업무----------.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1. 지능정보화 ---------- ----------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2. ---------- -- 실행계획----------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지능정보화 ---------- --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8. ---------- 지능정보화책임관---------- --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 지능정보화----------.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② ---- 지능정보화---------.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지능정보화 ----------.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지능정보화 ---------- 지능정보화---------.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다.	--.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지능정보화---------- 지능정보통합센터----------.
제12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지능정보화 교육----------.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 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 지능정보화 교육----------.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지능정보화 교육 ----------.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4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 지능정보화의 확산---------- 지능정보화 역기능----------

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이하 “정보취약계층”이라 한다)----. ② ---- 정보취약계층 ---------- ---------- ---------- ----------. ③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22-1087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첨부 요건을 변경하고 군민 정서에 맞게 경조사 종류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개선하며, 관련 법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 및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 첨부(안 제19조제3항)

○ 상위법령 법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21조제4항)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일수를 5일로 조정(별지 5)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 khs3630@korea.kr

전화 : 043)730-3173,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1조제4항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10일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1일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입 양	본인	20일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 칙 안	의 견

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22-64호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고, 대출권수 확대를 통해 군민의 독서 문화 진흥 및 도서 대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정신질환자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0조)

○ 대출 권수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평생학습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613, FAX: (043)731-269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제16조제2항 본문 중 “3권”을 “5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회 대출권수는 5권,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를 “대출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제한) ---------- ---------- ---------- ---------- ---.
1. 정신질환 및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6조(대출 및 반납) ① (생 략)	제16조(대출 및 반납)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하고 1회 대출권수는 3권까지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1회 대출권수는 5권,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 ---------- 5권--- ---------- ---------- ----------. -- ---------- ------ 대출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22-65호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의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행정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옥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제명 변경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2조, 3조 및 안 제7조부터 12조)

○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11조 및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평생학습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770, FAX: (043)733-876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옥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로,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실행위원회”를 각각 “실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행위원회”를 각각 “실무위원회”로, “실행위원”을 “실무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행위원회”를 각각 “실무위원회”로, 같은 조 제5항 중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실행위원장”을 “실무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옥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제2조(설치 및 기능)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청소년통합지원체계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7. ----------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심의위원회 ---------- ----------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② ---------- 심의위원회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심의위원회----------. ---------- ---------- ----------.
제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③ 심의위원회---------- ---------- ----------

로 의결한다.	--------.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 ---------- ---------- ---------- ----.
제8조(간사)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간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 ---------- ---------- ----------.
제9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 ----------.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 심의위원회 ---------- ---------- ---------- ----------.
제11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심의위원회 -------- ----------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심의 위원회----------실무위원회----------.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실무위원회----------.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
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 -----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장----------.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운영에 참여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 대상 청소년의 생활 실태 등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 실무위원회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옥천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 견